

의 안 번 호	1705	[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] 심사 보고서
------------------	------	-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2. 9.(화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2. 9.(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2. 18.(목)

2. 제안설명 요지(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)

가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남외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계획의 총괄

【취득대상 재산】

- 토 지 : 기 취득(2016. 04. 15.)
 - 수 량 : 1필지
 - 면 적 : 1,183 m²
- 그 외 재산 : 시설비 4,140,000천원

○ 취득대상 재산현황

- 토 지

(단위: m²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의 표 시				공시 가액	재산 가액	소유자	취득일
	소재지	지목	지적	편입면적				
1	남외동 180-7	주차장	1,183	1,183	592	700,336	울산 광역시 중구	공영주차장 조성으로 기 취득 (2016.04.15.)

○ 그 외 자산

(단위: m², 천원)

일련 번호	구분	사업 위치	시설내용	추정가액	취득사유	비고
1	건물	남외동 180-7	• 1층 부대시설(도서관 등) • 2층 주차장 • 3층 주차장	4,140,000	주차장 입체화 사업을 통하여 주차타워 건립	건축비

○ 사업계획

○ 사업목적 및 용도

- 삼일아파트 인근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불법주정차가 만연하는 실정으로, 기존 지상주차장의 입체화를 통한 주차시설 확충으로 불법주정차 해소 및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 도모
- 인근 병영지역 상업지구로의 유동인구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- 주차장 부대시설로 남외동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여 문화시설 공급을 통한 인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

○ 사업기간 : 2019년 9월 ~ 2022년 3월

○ 사업내용

- 위치 : 남외동 180-7번지
- 연면적 : 3,430 m²
- 시설내용 : 주차시설(건물) 약100여면 조성
※ 부대시설로 작은 도서관 조성

○ 소요예산

- 총사업비 : 4,140,000천원(국 2,070,000, 시 1,035,000, 구 1,035,000)
- 연도별 재원 및 사업비 내역

(단위: 천원)

연도 재원	계	2020년도	2021년도	사업비 내역
계	4,140,000	150,000	3,990,000	
국비	2,070,000	-	2,07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설계비 : 150,000 ◦ 건축비 : 3,891,000 ◦ 감리비 : 54,000 ◦ 기타 : 45,000
시비	1,035,000	150,000	885,000	
구비	1,035,000	-	1,035,000	

○ 사업규모

- 위치 : 남외동 180-7번지
- 부지면적 : 1,183m²
- 시설내용

층 별	합 계	주 차 장		기 타 시 설	
		면적(m ²)	주차면수(면)	면적(m ²)	시 설 종 류
총계	3,430m ²	2,300m ²	92	1,130m ²	
1층	1,064m ²	-	-	1,064m ²	관리실, 도서관, 화장실 공용(화장실, 계단 등)
2층	1,183m ²	1,150m ²	30	33m ²	공용(EV,계단 등)
3층	1,183m ²	1,150m ²	32	33m ²	공용(EV,계단 등)
옥상 (바닥면적제외)			30		기계실 공용(EV,계단 등)

※ 현재 구거 부지(남외동 966-9번지) 하천점용허가 중으로 주차장 건물 밖
지상에 노외주차장 8면 조성

○ 기준가격 명세

- 취득 : 그 외 재산 4,140,000천원(공사비 등)

○ 계약방법 : 일반 입찰에 의한 시설 조성

다. 근거법규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미경)

- 본 계획안은 삼일아파트 주변을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으로 조성
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근 병영지역 상업지구로 유동
인구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공유재산 취득으로
「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적법하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 거 법 규

지방자치법

제39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조례의 제정 · 개정 및 폐지
 2. 예산의 심의 · 확정
 3. 결산의 승인
 4.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· 수수료 · 분담금 · 지방세 또는
가입금의 부과와 징수
 5. 기금의 설치 · 운용
 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· 처분
 7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· 처분
 8.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
 9. 청원의 수리와 처리
 10.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
 11.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· 변경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 · 광역시 · 특별자치시 · 도 · 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 · 군 · 구(자치구를 말한다)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

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른다.

-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,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
 - 가. 취득의 경우: 20억원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)
 - 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(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)
 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 - 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6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)
 - 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5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)
-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.
1. 사업목적 및 용도
 2. 사업기간
 3. 소요예산
 4. 사업규모
 5. 기준가격 명세

6. 계약방법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· 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1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
2. 「도시개발법」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
3.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
4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취득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가목 · 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 · 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· 처분
5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
6. 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
7.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 · 처분
8. 「지방세법」 제117조에 따른 물납
9.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 · 처분
10.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 ·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 · 처분
11.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 · 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
12.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1.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
 2. 취득 ·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
 3. 토지의 면적이 30페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
 4.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페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.
 다만,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.
-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.
-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

“1건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같은 취득 · 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
 2.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 · 처분하는 경우
 3.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
 4.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 · 처분하는 경우
 5. 해당 재산에 인접(隣接)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 · 처분하는 경우
 6. 분필(分筆)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 · 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 · 처분하는 경우
 7.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⑦ 이 조에서 “기준가격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. 다만, 건물의 신축 · 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.

1. 토지: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[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(算定)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“개별공시지가”라 한다]
2. 건물
 - 가. 단독주택: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
 - 나. 공동주택: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
 - 다.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: 「지방세법」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
 - 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: 「지방세법」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
3.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: 「지방세법」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